

의안번호	제 42 호
의 결 년 월 일	1998. 11. 26. (제19 회)

의 결 사 항
원안가결

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보 은 군 수
제 출 년 월 일	1998. 11. 24.

기획감사실장 심사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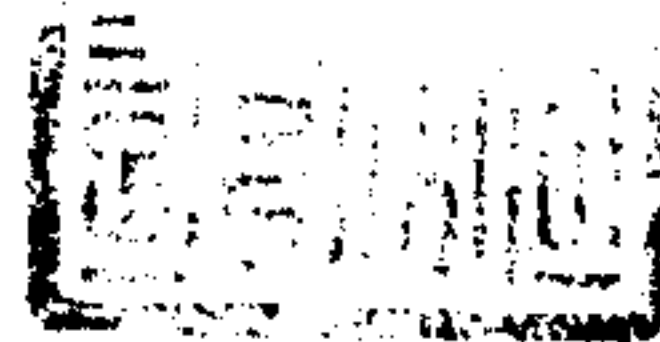
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1. 

제 출 자 : 보 은 군 수

1. 제안이유 : '98. 9. 26일 공포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조직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 임.



2. 주요골자

- 제4조2의 제3항 중 “민원처리계장”을 “민원담당주사”로, “주무계장”을 “주무담당주사”로 하고 “호병계장”을 “민원봉사담당주사”로 한다.

3. 근거법령 :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

4. 사전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첨부 : 1.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

2. 신·구조문 대비표

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

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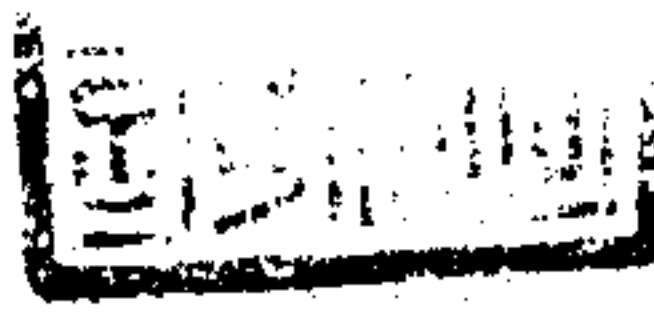
제4조의2 제3항 중 “민원처리계장”을 “민원담당주사”로, “주무계장”을 “주무담당주사”로 하고 “호병계장”을 “민원봉사담당주사”로 한다.

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 【수입증지요금 계기의사용】 ③군수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할 경우에는 계기사용의 취급 및 관리책임자를 군에서 <u>민원처리계장</u>, 사업소는 <u>주무계장</u>, 읍면에서는 <u>호병계장</u>으로 하고 유고시에는 소속기관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번호,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.	 제4조의2 【수입증지요금계기의사용】 ③군수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할 경우에는 계기사용의 취급 및 관리책임자를 군에서 <u>민원 담당주사</u>, 사업소는 <u>주무담당주사</u>, 읍면에서는 <u>민원봉사담당주사</u>로 하고 유고시에는 소속기관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번호,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